

가좌제일교회 장학규정

개정 2021년 2월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본 회는 가좌제일교회 교육위원회 장학부라 한다. (이하 본회라 함)

제2조 (사무소)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가좌제일교회 안에 둔다.

제3조 (목적) 본 회는 본 교회 학생의 신앙 육영 사업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조 직

제4조 (조직) 본 회는 교육위원회 임원, 장학부장, 각 부 부장, 차장을 부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 (임원) 본 회는 회장은 교육위원장이 맡으며 서기와 회계는 장학부장이 맡는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 (회의) 본 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및 임원회의를 갖는다.

1. 정기회의 - 매 결산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본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.
2. 임시회의 -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.
3. 임원회의 - 회장이 소집하며 장학금 지급 등의 실무를 처리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7조 (수입) 본 회의 수입금은 기금 운용의 수익과 교인들의 찬조금 및 교회 예산으로 한다.

제8조 (장학금 지급) 장학금 지급은 본회 기금의 운용수익과 교인들의 찬조금 및 교회예산에서 본회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9조 (보고) 본 회는 매 결산시 제 계정을 결산 후 기타 제 증빙서류를 당회에 보고한다.

제10조 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 연도는 교회와 같다.

제 5 장 장학생 선정 기준

제11조 장학생 선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1. 본 교회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의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이 힘든 학생으로 구역장, 청년회 임원 및 리더,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장학생은 바울 장학생¹과 요셉 장학생²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장학금 지급 비율은 7:3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또한 추천서는 대학생 본인이 직접 세부 사항을 작성하고 추천자는 추천서의 내용이 진실임을 보증한다.

2. 본 교회 등록 1년 이상 출석한 청년 대학생으로 한다. (청년부 또는 공예배 출석률 40% 이상) 단, 공예배 출석률은 해당 대학생이 증빙하여야 한다.

3. “바울 장학생”은 지급 년도 학기 이전 2학기, “요셉 장학생”은 지급 년도 학기 이전 1학기 내 장학금 수여 학생은 지급 할 수 없다.

4. 대외에서 우수표창이나 예체능 특기자는 본 회의 추천을 받아 본회 결정으로 지급 할 수 있다.

5. 상세 선정 기준 표

선정기준	점 수			비 고
신앙생활	청년예배 출석률(20점)	80%이상(20점) 70%이상(15점) 50%이상 (10점)		*2019년 하반기 출석 률을 참조한다.
	교회봉사 (상한선 없음)	각 봉사 당 10점		*2019년 하반기 봉사 를 참조한다.
학업성적	3.5 이상	3.0~3.49	2.5~2.99	*직전 학기 성적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.
	20점	15점	10점	
가정환경	편부, 편모, 조손가정	국가장학금 소득 1~8 분위		*해당서류 첨부을 원 칙으로 한다.
	20점	1~3(25점), 4~6(20점), 7~8(15점)		

¹ 바울 장학생: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 일에 힘쓰고 학식이 준수하며 교회 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.

² 요셉 장학생: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고 성경에 나오는 큰 인물이 된 것처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수여.

- * 장학부는 선정 기준 점수표를 작성하여 심사한다.
- * 청년부 부장은 출석부를 비치 하고 대상자의 출석률을 제시한다.
 - 지방거주 학생은 겨울수련회, 여름수련회를 참석하면 하반기는 1,2월, 상반기는 7,8월 출석율로
같은한다
- *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한 한다.(예시 : 사이버학교, 대안학교)
- * 공예배 출석률의 신앙생활 점수는 청년예배 출석률의 70%로 비례 산정한다.
(80%이상-14점, 70%이상-10.5점, 50%이상-7점)

제 6 장 부 칙

제12조 본 회의 규정은 본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3조 본 규정에 명시치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.

제14조 본 회의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 한다.